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형평성 유지와 군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3. 22 ~ 4. 13(23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군수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 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성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에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근거법령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역보건법 제26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6조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예정된 처분의 과태료 제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과태료 금액</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법 적 근 거</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4">의 견 제 출</td><td rowspan="3">제출처</td><td>부서명</td><td></td><td>담 당 자</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 주 소</td><td></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colspan="2">기 한</td><td colspan="3">년 월 일 까지</td></tr>
</table>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3">의 견 제 출 서</td></tr>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성명(명칭)</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 colspan="2">3. 의 견</td><td></td></tr>
<tr><td colspan="2">4. 기 타</td><td></td></tr>
<tr><td colspan="3">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r><td>비고</td><td colspan="2">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상호(법인명)		신고(인허가)번호	제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처분이유			
근거법령			
처 분 내 용			
의견청취 결 과			

귀하는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성 주 군 수

세외수입 고지서 재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세외수입

납 부 자: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납금액		

부 과 내 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 5 . 성 주 군 수 수납인

* : , , , , , 동협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성주군 수 납 의 뢰 서 ()

세외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수납인

성주군 OC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세외수입

*

납 부 자: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수납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독 촉 번 호			납 기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주 군 수 ㊞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 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와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납 부 통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 과 기 관		⑦ 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4.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납(체납)부

일련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